

경조금지급규정

개정 2025.01.01

(주)파인에스엔에스

경조금 지급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주식회사 파인에스엔에스(이하 "회사"라 한다) 전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휴가 및 경조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대상)

본 규칙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

제 3 조(종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위로금은 다음 8종류에 한한다.

1. 결혼 휴가 및 축의금
2. 칠순 또는 팔순 휴가 및 축의금
3. 사망 휴가 및 조의금
4. 출산휴가 및 축의금

제 4 조(지급 기준)

1. 경조휴가 및 경조금은 [별표#1. 경조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기타 사규 또는 법령과의 관계)

1. 본 규칙에 의한 지급은 법령 기타 사규에 의한 지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휴직 규정에 의하여 급여지급이 정지된 휴직자에게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화환이 지급되는 경조사에 한해 경조화환은 지급한다.

제 6 조(지급방법 및 순위)

1. 본 규칙에 의한 지급은 통화로써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

용한다.

3. 동일사유에 의한 경조금 또는 위로금 수령자가 동일회사 내 2인 이상 있을 경우, 수령 해당자별로 별표#1. 경조금 지급 기준표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4.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개 회사의 직위를 겸한 수령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위의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또한 결혼 상대자 쌍방이 모두 결혼 축의금 수령 해당자의 경우와 직원의 형제자매 및 직계 존비속 상호간이나 또는 그들과 타 직원간에 결혼할 경우에도 양가 수령 해당자 쌍방에게 해당 결혼 축의금을 지급한다.

5. 모든 경조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조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휴가의 경우로써 경조일이 공휴일일 때는 전일 또는 후일을 경조휴가로 지급한다.

6.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에게는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경조 휴가와 화환은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근속기간 산출 기준일은 서류상(청첩장, 주민등록등본, 사망확인서, 출생신고서 등) 표기된 경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근로자 근속기간은 임원 근속기간에 산입 한다.

8. 본 규칙에서 정한 경조금 지급 방법으로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경비 중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제 7 조(지급조건 및 기준변경)

1. 본 규칙에 의한 지급은 별표#1. 경조금 지급 기준표의 지급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외적 또는 대내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 지급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을 유예 혹은 정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

2. 지급 조건, 기타 정상참작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또는 별도의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청구기간)

본 규칙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 발생일로 1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경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만원, 일)

| 구 분 | | 지원범위 | 경조금 | 휴가 | 화환/ 조화 | 비고 |
|------------|----------|-----------------------|-----|----|-----------|---|
| 경사 (慶事) | 결혼 | 본인 | 50 | 5 | ○ | - 결혼 1회에 한 - 증빙: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 | | 자녀 | 30 | 1 | ○ | |
| | 칠순 or 팔순 | 부모 (본인, 배우자) | 20 | 1 | × | - 동일 대상자 당 1회만 해당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 | | 자녀(단태아) | 30 | 20 | × | |
| | 출산 | 자녀(다태아) | 60 | 20 | × | - 출생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증빙: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조사 (弔事) | 사망 | 본인 | 500 | - | ○ | |
| | | 배우자 | 100 | 10 | ○ | |
| | | 부모(본인, 배우자) | 50 | 5 | ○ | |
| | | 자녀 | 50 | 5 | ○ | |
| | | 조부모/외조부 모(본인, 배우자) | 20 | 3 | ○ | |
| | |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 - | 3 | × | |
| | | 백/숙부모 (본인) | - | 1 | × | |

*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